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 2015년 3월 3일 본회의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본 법률”)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 대상을 민간 상용 서비스로 한정

본 법률 제2조제3호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였습니다(제2조). 따라서 본 법률의 적용 대상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업적인 서비스로 한정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본 법률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제4조). 또한 다른 법령에서 인, 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제21조). 이로써 기존에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설비 요건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3.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에 대한 범부처적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 법률은 정부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5조 제1항),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제5조 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

원을 할 수 있고(제11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제10조), 클라우드컴퓨팅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제17조). 그 외에도 연구개발사업 추진·지원(제8조), 시범사업 추진·지원(제9조),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제15조),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제16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노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그 수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제12조), 공공기관은 업무를 위하여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제20조).

5.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자 보호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에서는 이용자 정보가 제공자에게 이전·관리되고 여러 이용자의 정보가 한 곳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법률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관련 표준계약을 제·개정하여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23조, 제24조).

또한 제공자는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 등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알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 이에 더하여,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정보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26조),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도 그 관련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공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여(제29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6. 맺음말

클라우드컴퓨팅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세에 있으나 대다수의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자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기술·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부족, 보안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 기타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등으로 인하여 향후 예상되는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본 법률은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각종 활성화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에 있어서는 본 법률과의 관계를 참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해외에 클라우드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IT기업 및 이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사업 계획을 세움에 있어 본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윤종수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40 | E-Mail. jsyoon@shinkim.com |
| ● 조정희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1624 | E-Mail. jhcho@shinkim.com |
| ● 박영준 변호사 | TEL. 02 316 1603 | E-Mail. yjopark@shinkim.com |

Chambers Asia-Pacific Awards 2014
South Korea Law Firm of the Year : Shin & Kim



SHIN&KIM
법무법인 세종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regular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http://www.shinkim.com>